

4. 법적근거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3조 제4항제4호 및 제6호

5. 안내사항

처분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6. 문의사항

상기 처분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(☎ 02-2133-3711, FAX 02-2133-102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-1766호

도시관리계획(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한 열람공고

- 서초구 우면동 141번지 품질시험소 별관부지 신축사업 -

1. 품질시험소 별관부지(서초구 우면동 141번지) 도시관리계획(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법 시행령 제2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6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19년 7월 4일
서울특별시

가. 열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

나.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: 서울시청 거점성장추진단 산업거점활성화반(☎ 02-2133-8477)

다.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

- 1)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없음)
- 2)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

구 분		면 적 (㎡)		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
주거지역	제3종일반주거지역	320,938	증) 5,075	326,013	연구시설
녹지지역	자연녹지지역	1,111,949	감) 5,075	1,106,874	연구시설

- 3)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없음)

4)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
구 분	위치	면적(㎡)	기준/ 허용용적률	건폐율	높이	비 고
기 정	우면동141	5,971.8	40%이하/ 50%이하	20%이하	15m이하	연구시설
변 경	우면동141	5,075	250%이하/ 250%이하	50%이하	35m이하	연구시설

※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로 인해 896.8㎡편입 예정

※ 기타사항 게재 생략 :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같음

라. 관련도서 : 게재 생략(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와 같음). 끝.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-1767호

도시계획시설(하수도) 실시계획 작성(경미한 사항 변경) 열람 공고

건설부고시 제84호(1983.03.14.)로 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650호(1983.12.3.)로 지적 승인된 도시계획시설(하수도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작성(경미한사항변경)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.

2019년 7월 4일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73-36 외119필지 일대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작성(경미한사항변경)
3. 사업의 내용 : 슬러지건조시설 예비품 보관창고 증축공사
 - 규모(증축) : 지상1층, 연면적 121.5㎡
 - 구조 및 용도 : 철골조(샌드위치판넬조), 자원순환관련시설(부속창고)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 중량물재생센터소장
5. 사업착수예정일 : 2019년 7월
6. 사업준공예정일 : 공사착수일로부터 2.5개월
7. 열람기간 : 2019. 7. 4. ~ 2019. 7. 18.
8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중량물재생센터 관리과 ☎ 02-2211-2524)
9. 본 열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